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46

발의연월일: 2025. 4. 30.

발 의 자: 박덕흠 · 김예지 · 김선교

이종배 • 조지연 • 고동진

서천호 · 강승규 · 김재섭

김정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프로스포츠 경기 입장권 판매가 인터넷 예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, 현장 판매는 주로 온라인 예매 후 잔여 좌석분에 대하여이루어지고 있음.

그런데, 인기가 많은 스포츠 경기의 경우 대부분 인터넷 예매로 입장권 판매가 완료되므로, 노인층과 같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않은 사람들이 운동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약되고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,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 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, 정보 접근성 강화 등 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관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3제2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의 제목 중 "장애인의"를 "장애인 등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,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경기의 입장권 등의 구매 경로 다양화, 정보 접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<u>장애인의</u> 스포츠관람	제18조의3(<u>장애인 등의</u> 스포츠관
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) (생	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)
략)	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
	음)
<u> <신 설></u>	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
	인, 노인 등 정보기기 활용능력
	이 부족한 사람의 스포츠를 관
	람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
	프로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
	의 구매 경로 다양화, 정보 접
	근성 강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
	<u>여야 한다.</u>